



# 식품의약품안전처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축·수산물의 기준 미설정 항균제 잔류기준 개정사항 알림 포스터 제작 및 배포

1. 귀 기관(단체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항균제에 적용하는 일률기준을 0.01 mg/kg으로 강화('22.1월 시행)한 '식품의 기준 및 규격(식약처 고시 제2020-40호)' 개정사항을 민원인 및 관련업무 담당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3. 참고로, 해당 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([www.foodsafetykorea.go.kr/](http://www.foodsafetykorea.go.kr/) 알림·교육 > 교육홍보자료실 > 홍보자료)에서 열람 및 다운로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붙임 : 축·수산물 안심하고 드세요(웹용 포스터). 끝.

## 식품의약품안전처장

수신자 본부, 평가원, 지방청, 유관기관 및 지자체, 보건환경연구원, 동물위생시험소, 시험검사기관, 소비자 단체 및 협회, 주한외국대사관, 주한외국상공회의소 등



주무관	박세종	연구관	정지윤	유해물질기준 과장	전결 2022. 1. 19. 신영민
-----	-----	-----	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협조자

시행 유해물질기준과-240 (2022. 1. 19.) 접수

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, 식품의약품 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/ [www.mfds.go.kr](http://www.mfds.go.kr)

전화번호 043-719-3875 팩스번호 043-719-3850 / [sjpark517@korea.kr](mailto:sjpark517@korea.kr) / 대국민 공개